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7호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1. 개 요

2.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 미국의 입법례

4. 영국의 입법례

5. 시사점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정보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7호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작성자 :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 률 정 보 실

목 차

1. 개 요 ····· 1

2.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3

가.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 ····· 3

나.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 ····· 4

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기존 판례의 변경 ····· 4

3. 미국의 입법례 ····· 9

가. 퇴직연금의 종류 ····· 9

나. 사회보장연금 ····· 10

다. 사적퇴직연금 ····· 14

라. 공적퇴직연금 ····· 21

4. 영국의 입법례 ····· 32

가. 연금분할의 대상 ····· 32

나. 연금분할의 방법 ····· 32

5. 시사점 ····· 37

〈참고문헌〉 ····· 40

1.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2만 쌍이 혼인을 하고 그 중 3분의 1이 넘는 11만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등 이혼이 매우 흔한 사회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1] 부부의 이혼에 의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해체되게 되면, 그러한 공동생활에 의해 형성된 공동재산도 함께 청산할 필요가 발생하며, 우리 민법도 1990년 민법 개정 시에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공동재산')"의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등과 같은 전통적 재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데에 반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스톡옵션 등과 같이 비전통적 재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기퇴직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적인 노후대비가 취약하여짐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기타 공공부조로서의 각종 사회보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7

1)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통계는 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0) 참조(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월 16일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특수직역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원이 연금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임의이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및 영국에서는 퇴직연금분할의 집행곤란성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상 재산분할의 대상

민법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래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이를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나. 퇴직연금분할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혼 당시(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를 기준으로 이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나, 이혼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입장으로 장래의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부인하고 있었다.[3)]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한 기존 판례의 변경

(1) 판결요지

3)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등.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각각 장래의 공무원연금[4]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5]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사회보장수급권 이외에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퇴직급여의 수령을 위한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그러한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도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당사자 부부의 일방이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대상이 된다.

또한 대법원은 일시금 이외에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다. 즉,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평상 다른 일반재산과 퇴직연금수급권을 구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2) 판결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분할권리자와 분할의무자인 부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정기금형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의 집행이 문제가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6] 그러나 이러한 집행방식은 간접적인 것이므로 분할의무자가 끝까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결국 분할권리자가 연금사업자나 각 연금의 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연금 관련 법규에서는 연금수급권을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7] 이러한 규정

6) 정기금의 미지급 시에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분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시킬 수도 있다.

7)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들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즉,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 수급권자가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연금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또는 연금 권한이 타인에 의해 압류된 경우 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양도·압류금지조항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채권집행방식인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인 각 연금사업자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분할권리자에게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입법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의 입법례

가. 퇴직연금의 종류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일반적으로 사적 연금, 공적 연금, 군인 연금의 3가지로 구별하고 있다.[8] 사적퇴직연금플랜(private retirement plan)은 민간분야의 사용자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그 형태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이다. 공적퇴직연금플랜(public retirement plan)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혼재되어 있다. 군인퇴직연금플랜(military retirement plan)도 공적 연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른 공적 연금과는 달리 확정급여형으로,[9]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 기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0]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된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층구조의 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제1층 연금에 해당되므로 제2층으로 사적연금이나 기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회보장연금에

8) Susan J. Prather, *Characterization, Valuation, and Distribution of Pensions at Divorce*, 15 J. Am. Acad. Matrim. Law. 443, 444 (1998).
9) Marshall S. Willick, *Military Retirement Benefits in Divorce: A Lawyer's Guide to Valuation and Distribution* (ABA Publishing, 1998).
10) Robert D. Feder, *Valuation Strategies in Divorce*, at 310 (4th ed., Aspen 2003).

가입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사회보장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먼저 기술하고 사적 연금 및 기타 공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회보장연금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사회보장연금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11]에 의해 도입된 공적연금제도이다. 최초에는 민간분야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퇴직연금체계는 다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1층 연금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근로자가 1층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의무가입하고 2층으로서 각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적퇴직연금플랜에 가입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공분야에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공무원인지, 또는 주·지방정부의 공무원인지 또는 경찰, 소방관,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인지에 따라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연방공무원의 경우 1984년 이후에 임용된 경우에만 사회보장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바, 사회보장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임용일을 기준으로 나뉘게

11) 정식명칭은 「연방 노령 및 유족연금법(Federal Old Age and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Act)」이다(42 U.S.C. § 401 *et seq.*). 관련 규칙은 20 C.F.R. 404.1 *et seq.*

되었다. 또한, 주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50년대부터 지방공무원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허용된 이래로 현재는 전체 주지방공무원의 4분의 3 정도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12] 군인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허용되었다.[13]

(2) 사회보장급여의 분할

사회보장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재산(marital property)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인 연금(pension)이나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이 아니며, 주법에 우선(preempt)하는 연방제정법에 의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14]

미연방법전 제42편 제407조는 장래의 사회보장연금수급권에 대한 양도 및 압류와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15] 이러한

12) Katelin P. Isaacs,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Benefits and Financing,* CRS Report, January 30, 2014, p. 1.

13)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us/govment.pdf (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14) *Principe v. Principe,* 229 A.D.2d 522, 644 N.Y.S.2d 1005; *Thomas v. Thomas,* 221A.D.2d 621, 634 N.Y.S.2d 496.

15) 42 U.S.C. § 407(a) ("이 절(subchapter)에 의한 연금수급권은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 양도될 수 없으며, 이 절에 의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전 및 이 절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는 집행, 과세, 압류 또는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파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방법상의 양도·압류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주 법원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할을 집행할 수 없다(*Gentry v. Gentry,* 327 Ark. 266, 938 S.W.2d 231 (1997); *In re Marriage of Hulstrom,* 342 Ill. App. 3d 262, 276 Ill. Dec. 730, 794 N.E.2d 980 (2d Dist. 2003); *Boulter v. Boulter,* 113 Nev. 74, 930 P.2d 112, 52 Soc. Sec. Rep. Serv. 561 (1997)).

압류금지조항의 취지는 사회보장연금 수급권자 및 그 부양가족을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16] 예외적으로 미연방법전 제42편 제659조에서 부양료(alimony)나 자녀양육비의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17]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8] 따라서 최소한 이혼으로 인한 사회보장급여의 분할은 연방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9]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20] 해석상 분할금지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아무 때나 근거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21]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권이나 계약에 의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2]

16) *Kirk v. Kirk,* 577 A.2d 976 (1990); *Sharlot v. Sharlot,* 494 N.Y.S.2d 238, 110 A.D.2d 299 (1985); *Meadows v. Meadows,* 619 P.2d 598 (1980); *Brown v. Brown,* 32 Ohio App. 2d 139, 288 N.E.2d 852 (1972).

17) 42 U.S.C. § 659(a).

18) 42 U.S.C. § 659(i)(3)(B)(ii).

19) 연방제정법상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족급여(derivative benefits)가 인정되는데 이를 재산분할로 오해하지 말아야만 한다. 혼인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가 만 62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소득기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42 U.S.C. § 402(b); 20 CFR 404..330).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 가입자인 배우자의 수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하게 된다(20 CFR 404.333). 그러나 이를 우리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제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분할연금제도는 가입자인 배우자의 연금액을 전(前)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나,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족급여는 상대방 배우자의 급여(primary benefits)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William P. Statsky, *Family Law,* at 338 (6th ed., Cengage Learning 2013) 참조;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http://www.ssa.gov/retire2/applying6.htm#a0=0 또는 http://www.ssa.gov/retire2/divspouse.htm (미국 사회보장국 공식홈페이지) 참조(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20) 연방대법원은 사회보장급여가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쟁점을 아직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 (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17).

21) 42 U.S.C. § 1304.

퇴직연금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사업자로부터 장래의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받는 데에 반하여, 사회보장연금은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은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governmental safety net)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급여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23]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연방 제정법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상의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분할할 재산(asset)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도 사회보장연금수급권의 양도는 주법에 우선(preempt)하는 연방제정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24]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은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기껏해야 다른 공동재산(marital property)을 분할함에 있어서 기타 사정(one relevant factor)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5] 더 나아가 일부 주의

22) *Fleming v. Nestor,* 363 U.S. 603 (1960); *Hisquierdo v. Hisquierdo,* 439 U.S. 572, 587 (1979).

23) *Cox v. Cox,* 882 P.2d 909, 920 (Alaska 1994), S.C., 931 P.2d 1041 (Alaska 1997) (citing *Mann v. Mann*, 778 P.2d 590, 592 (Alaska 1989)); *Mahoney v. Mahoney,* 425 Mass. 441, 444 (1997) (citing Cox); In Re Marriage of Kelley (1976, 2d Dist) 64 Cal App 3d 82, 134 Cal Rptr 259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조건을 갖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급여의 액수는 과거의 근로 제공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과거 근로에 대한 연기된 보상(deferred compensation)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4) 매우 극소수의 주에서 연방제정법의 우선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를 단순히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한 판례가 있으나, 연방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판례는 없다. *In re Marriage of Wilson,* 449 N.W.2d 890 (Iowa Ct. App. 1989); *In re Marriage of Gilmore,* 943 S.W.2d 866 (Mo. Ct. App. S.D. 1997); *Wiercinski v. Wiercinski,* 116 A.D.2d 789, 497 N.Y.S.2d 179 (3d Dep't 1986); *Murphy v. Murphy,* 797 So. 2d 325 (Miss. Ct. App. 2001); *Traxler v. Traxler,* 730 So. 2d 1098 (Miss. 1998) 참조.

25) 이러한 다수 주법원의 입장은 전원합의체에 의해 변경되기 전의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In re Marriage of Pratt, 489 N.W.2d 56 (Iowa Ct. App. 1992);

경우에는 기타 사정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6]

다. 사적퇴직연금

(1) 사적퇴직연금플랜의 의의

사적퇴직연금플랜이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임의적 퇴직급여로서 현재의 임금을 은퇴 시로 연기하여 받는 것을 말한다.[27] 따라서 퇴직연금플랜(retirement plan)[28]은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의

Crace v. Crace, 396 N.W.2d 877 (Minn. Ct. App. 1986); *Gross v. Gross,* 8 S.W.3d 56 (Ky. Ct. App. 1999); *Pongonis v. Pongonis,* 606 A.2d 1055 (Me. 1992); *Pleasant v. Pleasant,* 97 Md. App. 711, 632 A.2d 202 (1993); *Mahoney v. Mahoney,* 425 Mass. 441, 446 (1997). (원문에는 "a judge may consider …… social security benefits as one factor, among others, in making an equitable distribution ……"이라고 되어 있음); *David v. David,* 954 S.W.2d 611 (Mo. Ct. App. W.D. 1997); *Olson v. Olson,* 445 N.W.2d 1, 14, 27 Soc. Sec. Rep. Serv. 279 (N.D. 1989); *Neville v. Neville,* 99 Ohio St. 3d 275, 2003-Ohio-3624, 791 N.E.2d 434 (2003); *In re Marriage of Zahm,* 91 Wash. App. 78, 955 P.2d 412 (Div. 3 1998), aff'd, 138 Wash. 2d 213, 978 P.2d 498 (1999). 기타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경우로는 *Stanley v. Stanley,* 956 A.2d 1 (Del. 2008); *Forrester v. Forrester,* 953 A.2d 175 (Del. 2008); *Depot v. Depot,* 2006 ME 25, 893 A.2d 995 (Me. 2006); *Dinges v. Dinges,* 16 Neb. App. 275, 743 N.W.2d 662 (2008); *In re Heinrich,* 164 N.H. 357, 55 A.3d 1025 (2012); *Johnson v. Johnson,* 2007 SD 56, 734 N.W.2d 801 (S.D. 2007); *Olsen v. Olsen,* 2007 UT App 296, 169 P.3d 765 (Utah Ct. App. 2007); *Leathers v. Leathers,* 216 Ariz. 374, 166 P.3d 929 (Ct. App. Div. 1 2007).

26) *Olsen v. Olsen,* 445 N.W.2d 1 [N.D.1989]; *English v. English,* 879 P.2d 802 [N.M.App.1994]. 이러한 주들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는 연방대법원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27) John J. Topoleski, *Worker Participation in Employer-Sponsored Pensions: A Fact Sheet,* CRS Report, March 26, 2014, p. 1.

28) 근로자의 퇴직 시 고용에 의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계획을 'Retirement Plan'이라고 한다. 일시금으로서의 퇴직금이나 정기금으로서의 퇴직연금도 이러한 재정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계획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플랜'이라고 한다.

성격으로 파악된다.[29] 따라서 퇴직연금수급권이란 계약에 의한 일종의 채권으로서 근로자가 은퇴할 장래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0]

퇴직연금플랜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으로 나뉜다.[31] 확정기여형플랜(DC)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함께 또는 각각 적립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가입자별로 별개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다.[32] 가입자가 각 계좌의 자금의 투자형태와 분배를 결정하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에게 있다. 각 계좌의 자금은 투자되고 그 수익 또는 손실은 자금잔액에 비례하여 각 가입자들에게 분배된다. 가입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입자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퇴직연금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를 일시금(lump sum payment)으로 받게 되며, 플랜에 따라서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은퇴시에 실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총액을 현재 산정할 수 없다.

확정급여형플랜(DB)은 근로자의 은퇴 시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benefit)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33]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나 일부의 경

29) *DeMarco v. DeMarco,* 787 A.2d 1072, 1075(Pa, Super. Ct. 2001).
30) *Id.* at 1075-76.
31) 우리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에서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32) Elizabeth B. Brandt, *Valuation,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Retirement Plans at Divorce: Where are We?,* 35. Fam. L.Q. 469, 471 (Fall 2001). 대표적으로는 소위 '401k plan'이라고 불리는 연금플랜이 있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1조 제k항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을 401k계좌에 적립하면 사용자가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금액을 그 계좌에 적립해 주는 것이다.
33) *DeMarco v. DeMarco,* 787 A.2d 1072, 1076(Pa, Super. Ct. 2001).

우에는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기도 한다.[34] 퇴직급여는 퇴직연금플랜에서 정해진 공식[35]에 따라 결정되며,[36] 일반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연방의회는 퇴직연금 및 기타 복지혜택에 있어서 민간분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37]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연금플랜을 도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나, 퇴직연금플랜에 대한 요건을 법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퇴직연금플랜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렇게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퇴직연금플랜을 '적격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한다.

(2) 사적퇴직연금의 분할

(가) ERISA의 재산분할금지

사적퇴직연금플랜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다수의 주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일부 주법원의 경우에는 장래의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플랜에 대하여 이는 단지 '기대(expectancy)'에 불

34) *In re Marriage of Kelm,* 912 P.2d 545, 548 (Colo. 1996).
35) 일반적인 경우에 근속기간과 특정기간 동안의 평균급여를 통해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36) *DeMarco v. DeMarco,* 787 A.2d 1072, 1076(Pa, Super. Ct. 2001).
37) Pub. L. 98-397.

과함을 이유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38]

그런데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이 제정되면서 이의 적용을 받는 '적격플랜'에 대해서는 연방제정법이 주법에 우선(preempt)하게 되었다. 그런데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은 근로자 퇴직 시의 연금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retirement benefit)에 대한 양도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39] 이로 인하여 이혼 시 사적퇴직연금플랜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나) REA에 의한 재산분할허용

연방의회는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에 의한 불합리함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tirement Equity Act of 1984, 'REA')」[40]을 제정했다. 의회는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 제정 당시에 혼인관계를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 간주하여 그러한 관계부터 발생한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 및 배우자의 공동기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퇴직금의 지급형태(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가입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배우자도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으

38) Statsky, *supra* note 19, at 336.

39) 29 U.S.C. § 1056(d)(1)(각 퇴직연금플랜은 당해 플랜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양도 또는 매각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6 U.S.C. § 401(a)(13)(A)(퇴직연금은 양도될 수 없다). 이러한 양도금지규정은 퇴직연금가입자가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U.S. Dep't of Labor Pension and Welfare Benefits Admin., *QDRO The Division of Pensions Through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at 3 (1997)).

40) Pub. L. 98-397. 이 법은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를 개정하는 것이다.

며, 두 번째로 '적격가사관계명령'을 도입하여 주법원 등의 가사관계명령이 연방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연금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배우자는 연금사업자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급여형태의 선택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에 의하여 개정된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에 의하면, 기혼 근로자에 대한 확정급여형플랜(DB)과 금전구입플랜(Money Purchase Plan)[41]이 은퇴 전 또는 은퇴 후의 유족연금(survivor annuity)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42]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에 의하면 (ⅰ) 근로자가 은퇴 전에 사망한 경우에(preretirement survivor benefits), 플랜은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ⅱ) 근로자(가입자)가 은퇴연령까지 생존한 경우에(postretirement survivor benefits),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연생(聯生)연금(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y, 'QJSA')'이 되므로, 은퇴 뒤에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최소한 근로자 생존 시 지급되던 연금의 50%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유족연금은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41) 확정기여형플랜(DC)의 기본형으로 사용자 단독 또는 근로자와의 공동출연으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하여 연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42) 29 U.S.C. § 1055; 26 U.S.C. § 417. 다만, 가입자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서면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43] 이러한 포기는 실제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이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단독으로 퇴직연금의 지급형태를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2) 적격가사관계명령

주법원 등이 발령한 '가사관계명령'이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시켜서 '적격가사관계명령(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QDRO))'[44]에 해당하게 되면,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의 연금수급권 양도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게 되었다.[45] 그 결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퇴직연금의 분할이 가능해졌다.

'가사관계명령'이란 주(州) 가족법(community property law를 포함함)

43) Purcell, P./Staman, J.. *Summary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CRS Report, April 10, 2008, p. 18.

44)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는 국내에서 원문 그대로 사용하거나(민유숙,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조」, 제535호, 2001.4., 133면) 또는 '검증된 가사 관계 명령'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차선자, "이혼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2012. 4., 224-225면). 주법원의 가사관계명령에 대하여 근로자퇴직평등법상 요건에 해당되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적격가사관계명령'으로 번역한다.

45) 29 U.S.C. § 1056(d)(1)에서 "각각의 퇴직연금플랜은 당해 플랜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benefit)가 양도(assign)되거나 매각(alienate)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양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29 U.S.C. § 1056(d)(3)(A)에서 "본조 본항 제1호의 규정은 가사관계명령(domestic relations order)에 의해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발생(creation), 양도(assignment), 확인(recognition)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명령이 '적격가사관계명령(QDRO)'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각의 퇴직연금플랜은 적격가사관계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격가사관계명령에 해당되면 양도금지규정의 예외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

에 의해 내려진 판결, 결정 또는 명령(재산분할합의의 승인을 포함함)으로서 배우자, 전(前)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가입자의 피부양인(dependant)에게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배우자부양료(alimony), 부부공동재산권(marital property rights)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46] 이러한 각 주에서의 가사관계명령이 '적격가사관계명령(QDRO)'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플랜에서 가입자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체 수혜자(alternate payee)'의 수급권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확인하는 명령, 또는 그러한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명령"[47]으로서 법률상 정해진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첫 번째로 가사관계명령에는 (ⅰ) 가입자 및 전(前) 배우자의 성명 및 주소, (ⅱ) 급여의 분할금액 또는 분할비율, (ⅲ) 급여의 지급횟수 또는 지급기간, (ⅳ) 당해 가사관계명령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48]

두 번째로 당해 가사관계명령에는 플랜으로 하여금 (ⅰ) 플랜이 본래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ⅱ) 당해 가사관계명령이 없는 경우에 플랜이 지급했을 금액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46) 29 U.S.C. § 1056(d)(3)(B)(ⅱ); 26 U.S.C. §§ 414(p)(1)(B)(i), (ii).
47) 29 U.S.C. § 1056(d)(3)(B)(ⅰ).
48) 이러한 요건은 29 U.S.C. § 1056(d)(3)(C)에서 규정되어 있음.
"(C) 가사관계명령은 당해 명령이 다음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본 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ⅰ) 가입자 및 당해 명령의 효력을 받는 배우자의 성명 및 최종 주소지(last known mailing address),
(ⅱ) 당해 플랜에 의해 배우자에게 지급될 가입자 급여의 금액 또는 비율, 또는 그러한 금액 또는 비율의 결정방식,
(ⅲ) 당해 명령이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횟수 또는 지급기간, 그리고
(ⅳ) 당해 명령의 적용대상 플랜".

하거나, (iii) 이전의 적격가사관계명령 때문에 다른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를 현재 가사관계명령상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만 한다.[49]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이 적격가사관계명령을 규정하게된 이유는 각 주법원이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의 연금수급권 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혼사건에서 부부간에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일부가 적격가사관계명령에 의해 가입자로부터 전(前) 배우자에게 양도되게 되며 이는 퇴직연금플랜에 전(前) 배우자 명의의 독립된 계좌를 창설하게 되는 것과 같다.[50]

라. 공적퇴직연금

(1) 공적퇴직연금의 의의

공적퇴직연금플랜(governmental plan)이란 좁게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각각의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플랜을

49) 이러한 요건은 29 U.S.C. § 1056(d)(3)(D)에서 규정되어 있음.
"(D) 가사관계명령은 당해 명령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 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ⅰ) 당해 플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명령이 플랜으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나 유형의 급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
(ⅱ) 당해 명령이 플랜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증가된 급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i) 이전에 적격가사관계명령으로 결정된 다른 가사관계명령에 의해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된 급여를 당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50) MDLPMII MA-CLE 16-1, § 16.7.

말한다.[51] 넓게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퇴직연금플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는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나 철도노동자에 대한 연금도 공적퇴직연금플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의 경우에는 민간근로자이긴 하나 연방정부가 별도의 독립된 연금플랜을 마련하고 있다.[52]

연방에서는 「1920년 공무원연금법(Civil Service Retirement Act of 1920)」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에 의하여 1983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CSRS')'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연금은 193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었으므로, 연방공무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을뿐더러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도 받지 않았다.[53]

그런데 1983년 연방의회가 「사회보장개정법(Social Security Amendments of 1983)」[54]을 제정하면서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연방공무원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FERS')'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방공무원도 사회보장세를

51) 29 U.S.C. § 1002(32). 주와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연금플랜은 2600종이 넘는다고 한다(Stats ky, *supra* note 19, at 338). 대부분의 연금플랜은 공무원의 기여금납부에 의해 운용된다.

52) http://www.ssa.gov/policy/docs/ssb/v68n2/v68n2p41.html (1920년대 당시 철도노동자의 30%이상이 가입하고 있었던 철도업계의 사적퇴직연금플랜은 불안정했었는데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많은 은퇴자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졌다. 그 결과 「1934년 철도퇴직연금법(Railroad Retirement Act of 1934년)」에 의해 '철도연금관리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 'RRB')'에 의해 관리되는 공적연금으로서 철도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53)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us/govment.pdf (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54) Pub. L. 98-21.

납부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55] 이에 의해 연방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이외에 사회보장세까지 중복하여 납부하게 되어 급여의 13%이상을 납입하게 되자, 의회는 「1986년 연방공무원퇴직연금제도법(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56]을 제정하여 새로운 연방공무원 연금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57]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CSRS)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납입하고 은퇴 시에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급여형연금플랜(defined benefit plan)이었다. 이와는 달리 「1986년 연방공무원퇴직연금제도법」에 의한 새로운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는 3층 구조로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방연금(Federal Pension),[58] 및 개인저축계정(tax-deferred savings plan(a.k.a. Thrift Savings Plan))[59]의 보장을 받게 된다.[60] 공무원연금제도(CSRS)체제에서는 공무원은 급여의 7%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고 정부가 동일한 액수를 적립하는 구조였으나,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제도에서는 7.65%를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하고, 0.8%를 연방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61]

일반연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가

55)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P.L. 99-335),
56) Pub. L. 99-335.
57) Isaacs, *supra* note 12, at 1.
58)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관리한다.
59) 401(K)플랜과 유사한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의 임의적립저축플랜이다. 인사관리처가 아니라 별도의 '개인저축계정관리투자위원회(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 'FRTIB')'가 관리한다.
60) Isaacs, *supra* note 12. at 1.
61)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us/govment.pdf (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적용되며, 외교국(Foreign Service)[62]이나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63], 또는 연방법관[64]과 같은 특수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금 플랜이 마련되어 있다.

(2) 공적퇴직연금의 분할

(가) 연방공무원연금

연방법상 대부분의 공적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65]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그 임용시기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CSRS) 또는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양도, 집행,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66]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방법은 어떤 경우이든지 주법원은 퇴직연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7]

---

62) 국무부 외교국에 대해서는 외무공무원연금제도(Foreign Service Pension System)가 마련되어 있다(22 U.S.C. §§ 4071-4071k)(전(前) 배우자에 대하여는 22 U.S.C. § 4071j 참조).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5296.pdf 참조(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63) 50 U.S.C. §§ 2001-2157. (전(前) 배우자에 대하여는 50 U.S.C. §§ 2302, 2154 참조).

64) 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관퇴직연금제도(Judicial Retirement System)'가 마련되어 있다. 28 U.S.C. §§ 371-377 참조.

65) 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13.

66) 5 U.S.C. § 8346(a); 5 U.S.C. § 8437(e)(2).

67) 5 U.S.C. § 8345(j)(1); 5 U.S.C. § 8412a(c)(4)(B); 5 U.S.C. § 8467. 공무원연금(CSRS)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전액을 연금분할의 대상으로 하며, 연방공무원연금(FERS)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연방연금(Federal Pension), 및 개인저축계정(Thrift Savings Plan)이 연금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은 사적퇴직연금플랜에만 적용되고 공적퇴직연금플랜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68] 그 결과 「1984년 근로자퇴직평등법(REA)」으로 도입된 '적격가사관계명령(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QDRO))'에 의해 공적퇴직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69] 따라서 각 주법원의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CSRS) 또는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70] 이러한 명령을 '절차적합명령(Court Order Acceptable for Processing(COAP))'이라고 하며, 그 요건은 연방규정집에 규정되어 있다.[71] 따라서 주법원의 '절차적합명령(COAP)'이 공무원연금관리기관[72]에 제출되면 연방정부는 전(前) 배우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68) 29 U.S.C. § 1003(b)(여기서는 공적퇴직연금플랜, 교회퇴직연금플랜(church plan) 등을 적용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69) 예를 들어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상 근로자가 최소퇴직연령(minimum retirement age)에 이르기만 하면, 그 근로자가 아직 근속중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前) 배우자에 대하여 적격가사명령에 의한 연금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공무원연금(FERS) 또는 공무원연금(CSRS)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에게 실제 급여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퇴직급여에 효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적격가사명령에 의한 경우와 같은 전(前)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Court-Ordered Benefits for Former Spouses, RI 84-1, July 2014, p. 2.(also available at http://www.opm.gov/retirement-services/publications-forms/pamphlets/ri84-1.pdf(2014년 8월 25일에 최종방문함)).

70) *Id.*

71) 인사관리처(OPM)가 관리하는 연방공무원연금(FERS) 또는 공무원연금(CSRS)의 경우에는 5 C.F.R. part 838, subpart J, appendix A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저축계정관리투자위원회(FRTIB)'가 관리하는 개인저축계정(Thrift Savings Plan)의 경우에는 5 C.F.R. part 1650, subpart G, I에서 규정되어 있다.

72) 인사관리처(OPM) 또는 개인저축계정관리투자위원회(FRTIB).

(나) 철도퇴직연금

연방제정법상 철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73] 특히 연방대법원은 1979년 Hisquierdo v. Hisquierdo사건[74]에서 이러한 양도·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주법원이 철도퇴직연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하여 분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1983년 이를 개정하여[75] 철도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특히 '철도연금관리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 'RRB')'가 전(前) 배우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76]

이에 의하면 철도퇴직연금을 2층으로 구별하고 있는데,[77] 2층 연금(Tier II)은 주법원에 의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78] 1층 연금(Tier I)은 사회보장연금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79] 1층 연금에 대해서 비록 재산분할의 대상

73) 45 U.S.C. § 231m(a).

74) *Hisquierdo v. Hisquierdo,* 439 U.S. 572, 99 S. Ct. 802 (1979). 각종 연금의 분할을 금지하는 연방제정법이 주법에 우선(preempt)하는 가에 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로서, 이 판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주법원이 그 주 고유의 가족법에 따라 연금의 분할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했었다.

75) Pub. L. 98-76, Title Ⅳ, § 101.

76) 45 U.S.C. § 231m(b)(2).

77) *Id.*

78) *In re Marriage of Conger,* 492 N.W.2d 715 (Iowa Ct. App. 1992); *Padezanin v. Padezanin,* 341 Pa. Super. 26, 491 A.2d 130 (1985); *In re Anderson,* 134 Wash. App. 111, 138 P.3d 1118 (Div. 3 2006). 재산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20 C.F.R. part 295 참조.

79) *In re Marriage of Conger,* 492 N.W.2d 715 (Iowa Ct. App. 1992); *Larkin v. Larkin,* 415 N.W.2d 924 (Minn. Ct. App. 1987); *In re Anderson,* 134 Wash. App. 111, 138 P.3d 1118 (Div. 3 2006). 이러한 입장은 사회보장급여는 분할대상이 아닌데 반하여, 기타 퇴직연금은 거의 모두 분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공무원연금(CSRS)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연방공무원과 사회보장제도에의 가입이 임의가입임으로 인하여 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공무원의 경우에는 이혼 시 사회보장급여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을 해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기타

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다수 주의 입장이 공동재산분할 시 기타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1층 연금에 대하여도 기타 사정으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군인퇴직연금

1) 군인연금의 개요

1957년 이래로 모든 군인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program)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을 복무한 군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 이외에 퇴역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부터 추가적으로 군인퇴직연금(Military Retirement Plan)을 받는다. 이러한 군인퇴직연금은 기여금에 의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2) McCarty판결과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SFSPA)

군인퇴직연금플랜 역시 「1974년 근로자퇴직수입보장법(ERISA)」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적격가사관계명령에 의한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다수의 주들에서는 연방법상의 양도·압류금지규정[80]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부 주의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판결로서 사회보장연금 상당액을 가입자의 고유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취급하여 분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17 참조.

80) 37 U.S.C. § 701(c).

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군인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81]

그런데 1981년 연방대법원은 McCarty v. McCarty사건[82]에서 군인퇴직연금플랜에 관한 연방법률이 재산분할에 관한 주(州) 가족법에 우선하므로 주법원이 이혼 시 군인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의 재산분할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군의 인사관리(military personnel management)'차원에서 군인퇴직연금분할을 금지할 연방의 이익이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83] 즉, 군인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 직업을 창출하여 젊고 활력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84]

이러한 McCarty판결의 입장은 연방의회가 「1982년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s' Protection Act of 1982, 'USFSPA')」[85]을 제정하면서 변경되었다.[86] 이 법은 주법원이 "처분가능한 퇴직급여(disposable retired pay)"의 분할에 주법을 적용할 수

81) 이러한 각 주의 입장은 1979년 Hisquierdo판결(*Hisquierdo v. Hisquierdo,* 439 U.S. 572 (1979))에서 철도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금지한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82) *McCarty v. McCarty*, 453 U.S. 210 (1981).

83) *Id.* at 234.

84) *Id.*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i) 상당수의 현역군인이 단지 연금분할이 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산분할은 군 인사관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과, (ii)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군인 본인만의 희생이 아니며, 인사배치로 인해 잦은 이사를 하여야 하는 배우자와 가족들 모두의 희생이므로 연금분할을 금지할 연방의 이익(federal interest)과 연금분할에 관한 주의 이익(state interest)간의 이익형량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3)

85) Pub. L. 97-252, Title X (10 U.S.C. § 1408).

86) Hisquierdo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철도노동자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으나, McCarty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군인배우자들은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서 각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 판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982년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SFSPA)」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3).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7] 여기서 "처분 가능한 퇴직급여"는 "모든 월(月) 퇴직급여(total monthly retired pay)"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88] 또한 이 법은 1981년 6월 25일까지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89] 이는 McCarty판결의 선고일[90] 하루 전이므로 결과적으로는 McCarty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2년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SFSPA)」은 또한 군인의 전(前) 배우자가 군인의 "처분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한 자신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직접 수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91] (ⅰ) 군인이 10년 이상 복무하고 그 복무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하고,[92] (ⅱ) 전(前)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93] 이와 같

87) 10 U.S.C. § 1408(c)(1). 주의할 점은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SFSPA)」에 의해 군인퇴직연금이 당연히 분할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군인이혼배우자보호법(USFSPA)」에 의해 군인퇴직연금이 분할될 수 없다는 제한만이 폐지된 것이고, 실제로 분할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주법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88) 10 U.S.C. § 1408(a)(4). 따라서 퇴역군인장애급여(veteran's disability pay)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에 의한 분할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89) 10 U.S.C. § 1408(c)(1).

90) McCarty판결의 선고일은 1981년 6월 26일이다.

91) 10 U.S.C. § 1408(d).

92) 10 U.S.C. § 1408(d)(2). 군인의 전(前) 배우자들이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법원이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비록 연방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급여는 불가능하지만, 주법원은 여전히 군인인 전(前)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Michael H. Gilbert, *A Family Law Practitioner's Road Map to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s Protection Act,* 32 Santa Clara L. Rev. 61, 69 (1992); *Anciaux v. Anciaux,* 666 So. 2d 577 (Fla. Dist. Ct. App. 2d Dist. 1996); *DeLoach v. DeLoach,* 590 So. 2d 956 (Fla. Dist. Ct. App. 1st Dist. 1991); *Le Vine v. Spickelmier,* 109 Idaho 341, 707 P.2d 452 (1985); *Warren v. Warren,* 563 N.E.2d 633 (Ind. Ct. App. 2d Dist. 1990); *Carranza v. Carranza,* 765 S.W.2d 32 (Ky. Ct. App. 1989); *Warner v. Warner,* 651 So. 2d 1339 (La. 1995); *Scott v. Scott,* 519 So. 2d 351 (La. Ct. App. 2d Cir. 1988); *Stotler v. Wood,* 687 A.2d 636 (Me. 1996); *Deason v. Deason,* 611 N.W.2d 369 (Minn. Ct. App. 2000); *Stone v. Stone,* 725 S.W.2d 145 (Mo. Ct. App. E.D. 1987)).

은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는 주법원의 재산분할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前)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전(前) 배우자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군인인 전(前) 배우자의 "처분 가능한 퇴직급여"의 50%(전(前) 배우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대 65%)를 초과하여 군인의 전(前)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94]

(라) 기타 특수직역에 대한 공적퇴직연금

(1) 외무공무원퇴직연금의 분할

연방제정법은 외무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95] 따라서 주법원의 명령이 연방법과 관련 연방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외무공무원의 전(前) 배우자는 주법원의 명령에 의해 국무부로부터 급여를 직접 수급 받게 된다.[96] 연금의 직접지급을 위해서는 (ⅰ) 전(前) 배우자와 가입자의 혼인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기간 중 가입자가 최소 5년 이상을 외무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ⅱ) 전(前)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97] 전

93) 10 U.S.C. § 1408(h)(7)(A).
94) 10 U.S.C.A. §§ 1408(e)(1), 1408(4)(B).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50%나 65%의 상한은 연방정부가 직접 전(前)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법원은 여전히 그러한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10 U.S.C.A. § 1408(e)(6)).
95) 22 U.S.C. §§ 4054, 4060(b), 4069a; 22 C.F.R. Part 19.
96) 22 C.F.R. § 19.6-2.
97) 22 U.S.C. § 4054(1), (2).

(前)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가입자가 급여수급조건을 갖춘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종료되거나 전(前) 배우자의 사망 또는 60세 이전의 재혼으로 인해 종료된다.[98]

(2) 연방법관퇴직연금의 분할

연방법관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법전 제28편 제1장(Part I) 제17절(chapter 17)에서는 특별히 연금의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분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99]

98) 22 U.S.C. § 4054(3).

99) 28 U.S.C. § 376(t) (외무공무원퇴직연금의 경우와 전(前) 배우자의 수급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前) 배우자가 55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영국의 입법례

가. 연금분할의 대상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도 다층구조에 의한다. 1층은 국가연금(State Pension)이며 2층은 제2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 또는 Additional State Pension)이며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다. 여기에 다양한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을 임의가입하게 된다.[100] 일반적으로 급여로부터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운용된다.[101]

사적연금이나 제2국가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102] 국가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기록에 의해 별도의 가족연금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03]

나. 연금분할의 방법

영국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있다. 따라서 법원은 연금에 대하여 '오프세팅(offsetting)'[104]에 의해

100)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곽용수 편,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175-191면 참조.
101) Jane Sendall, *Family Law Handbook*, at 201 (4th ed., Oxford 2013).
102) Pension sharing on divorce, SN 0430, 6 February, 2012, p. 5. (available at 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0430.pdf (영국 하원도서관 조사국 보고서)(2014년 8월 25일에 최종 방문함).
103) *Id.* at 9.
104) 'offsetting'은 우리 민법 제492조의 상계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그러한

연금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권을 추가적으로 분할해 주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pension attachment order)'[105]이나 '연금분할명령(pension sharing order)'을 발령하여 전(前) 배우자로 하여금 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오프세팅(offsetting)

평가된 연금의 가치와 등가(等價)인 재산을 일방 당사자에게 더 분할하고 연금수급권은 다른 일방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106] 법원은 연금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일시금, 재산권의 분할, 또는 추가적인 정기금의 지급 등을 명할 수 있다.[107] 이 방식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108]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변경전 판례가 기타 사정으로 고려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가족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05) 'attachment'는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안소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압류에 가까우며, '연금분할명령(pension sharing order)'과는 달리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금수급자로부터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추심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번역한다.

106) Sendall, *supra* note 101, at 202.

107) Mary Welstead/Susan Edwards, *Family Law*, at 172(4th ed., Oxford 2013).

108) David Salter, *Can't Get No Satisfaction: Practical Solutions to Dividing and Enforcing Alternative Payee's Rights to United Kingdom Defined Benefit Plan Distributions When Divorced in the United States,* 23 J. Am. Acad. Matrim. Law. 349, 350 (2010).

(2) 연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Pension Attachment Order)

1996년 이전에는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에 법원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재산을 산정하면서 연금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었다(offsetting).[109]

1995년에 개정된 「1973년 혼인사건법(Matrimonial Causes Act 1973)」 제23조에 의하면, 법원은 퇴직연금사업자(pension provider)에게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시에 가입자의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前)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110]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111]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연기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deferred spousal maintenance)의 형태로 발령되므로 만약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실효되게 된다.[112]

그런데 연금압류명령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가입자는 연급의 지급개시 시점을 은퇴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전(前) 배우자는 가입자의 그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문제가 있었

109) Welstead/Edwards, *supra* note 107, at 172.
110) 이 명령은 「1995년 연금법(Pensions Act 1995)」 제166조에 의해 1996년 8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111) http://www.hmrc.gov.uk/manuals/eimanual/eim74010.htm (연금수급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액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전(前)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112) Sendall, *supra* note 101, at 203.

다.[113] 또한 법원은 연금가입자의 은퇴 전에는 연금압류결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전(前) 배우자는 재혼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114] 또한 은퇴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前)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감액된다.[115]

(3) 연금분할명령(Pension Sharing Order)

연금압류명령의 사용빈도가 낮으며 앞서 언급한 한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1999년 복지개혁 및 연금에 관한 법률(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 1999)」에 의해 연금분할명령이 도입되어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16] 연금분할명령은 이혼 시에 당사자간에 연급수급권을 분할하여 가입자로부터 배우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등가양도가치(Cash Equivalent Transfer Value)'의 비율로서 표시된다. 다만, 국민연금(state pension)과 사망 시에 지불되는 일정한 일시금(any lump sum payable on death)의 경우에는 수급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연금분할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명령은 이혼확정판결(decree absolute)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117]

연금분할명령에 의해 전(前) 배우자는 본인의 명의로 연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등 연금에 대한 본인의

113) Welstead/Edwards, *supra* note 107, at 172.
114) *Id.*
115) *Id.*
116) Matrimonial Causes Act 1973, s. 24B.
117) Sendall, *supra* note 101, at 203.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118] 즉, 일단 연금분할명령이 발령되면, 그 연금이 사적연금인 경우에, 그 수혜자(가입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share)의 관리에 대하여 현재의 연금사업자를 유지하거나 다른 연금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지분에 대한 명의는 자신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119]

연금분할명령은 연금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유일한 자산으로 오프세팅 할 수 있는 기타 자산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연금에 가입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그리고 예상 연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20]

주의할 것은 '연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연금분할명령'은 선택적이므로 양자를 동시에 발령할 수 없다는 점이다.[121]

118) Welstead/Edwards, *supra* note 107, at 173.
119) Sendall, *supra* note 101, at 203.
120) *Id.*
121) *Id.*

5. 시사점

사회가 고령화되는 가운데 퇴직 후 생활의 기초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각종 연금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특수직역연금에 퇴직연금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일반 기업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시금 형식의 퇴직금보다는 연금형식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한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혼이 빈번한 사회현상이 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당초 연금제도가 의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배우자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제도를 법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장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7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장래의 특수직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해석상 퇴직연금수급권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

산에 속한다는 실체법적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하며,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양도 및 압류 금지조항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분할권리자인 전(前)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연금을 직접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미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은 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재산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그 분할권리자인 전(前)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미의 입법례는 압류 및 양도금지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前) 배우자가 연금사업자 또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前) 배우자가 직접 연금을 수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할연금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외무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해당 직역의 인적 수급 등의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해당 직역 종사자를 다른 경우에 비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및 영국의 관련 입법례는 연금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실체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가입자인 배우자가 직접 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연금의 일부를 전(前)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구제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前)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를 통해 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금분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국내 문헌

(1) 단행본

곽용수 편,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2) 논 문

민유숙,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조」, 제535호, 2001.4.

차선자,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2012. 4.

Ⅱ. 외국 문헌

1. 미국 문헌

(1) 단행본

Feder, Robert D., Valuation Strategies in Divorce (4th ed., Aspen 2003).

Statsky, William P., Family Law (6th ed., Cengage Learning 2013)

Willick, Marshall S., Military Retirement Benefits in Divorce: A Lawyer's Guide to Valuation and Distribution (ABA Publishing, 1998)

(2) 논 문

Brandt, Elizabeth B., *Valuation,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Retirement Plans at Divorce: Where are We?,* 35. Fam. L.Q. 469 (Fall 2001)

Gilbert, Michael H., *A Family Law Practitioner's Road Map to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s Protection Act,* 32 Santa Clara L. Rev. 61 (1992)

Prather, Susan J., *Characterization, Valuation, and Distribution of Pensions at Divorce,* 15 J. Am. Acad. Matrim. Law. 443 (1998)

Salter, David, *Can't Get No Satisfaction: Practical Solutions to Dividing and Enforcing Alternative Payee's Rights to United Kingdom Defined Benefit Plan Distributions When Divorced in the United States,* 23 J. Am. Acad. Matrim. Law. 349 (2010)

(3) CRS 보고서

Isaacs, Katelin P.,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Benefits and Financing,* CRS Report, January 30, 2014

Purcell, P./Staman, J.. *Summary of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CRS Report, April 10, 2008

Topoleski, John J., *Worker Participation in Employer-Sponsored Pensions: A Fact Sheet,* CRS Report, March 26, 2014

(4) 기 타

U.S. Dep't of Labor Pension and Welfare Benefits Admin., QDRO The Division of Pensions Through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1997)

MDLPMII MA-CLE 16-1, § 16.7

2 Equit. Distrib. of Property, 3d §§ 6:3, 6:13, 6:17

http://www.ssa.gov/policy/docs/ssb/v68n2/v68n2p41.html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us/govment.pdf

http://www.opm.gov/retirement-services/publications-forms/pamphl ets/ri84-1.pdf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5296.pdf

2. 영국 문헌

(1) 단행본

Sendall, Jane, Family Law Handbook (4th ed., Oxford 2013)

Welstead, Mary/Edwards, Susan, Family Law (4th ed., Oxford 2013)

(2) 기 타

http://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0430.pdf

http://www.hmrc.gov.uk/manuals/eimanual/eim74010.htm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6)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23. 카페리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25.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7호

발 행 인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김광진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150-7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4년 8월 29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 31-9720102-001154-14

〈비매품〉

© 국회도서관 2014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